

# 1. 住宅分讓價原價連動制中 監理費 追加認定

建設部 住政：58500-702(94.4.8)

1. 주정 30417-25926('89. 11. 7) 및 주정 58500-156('93. 2. 6)의 관련입니다.
2. 94. 1. 7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의한 감리자 지정, 감리자의 시정명령과 공사중지명령제 도입, 감리자에 대한 처벌강화등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부터 감리비도 현실화 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94년부터 인상된 감리비가 주택분양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부실방지라는 제도개선 취지와 모순되고 감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건축비 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감리비 인상분만을 건축비에 가산하여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니 관련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감리비의 범위 : 동일공사비를 기준으로 '93년도에 적용되는 감리비와 '94년도에 적용되는 감리비의 차액
  - 적용대상 : '94. 4. 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
  - 적용시한 : 표준건축비 조정시까지